

월요광장

추징과 법치국가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세상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야단법석이다. 하나는 전두환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의 NLL발원 공개이다. 두 대통령은 모두 광주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더욱 관심이 간다.

전두환은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노무현은 광주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계기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광주시민들은 최근의 사태 진전을 낯다른 감회로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노무현은 고인이므로 여기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전두환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전두환은 군인으로서 군사반란과 내란을 일으킨 뒤 광주시민의 목숨을 내건 저항을 물리치고, 대통령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자이다. 그 과정에서 수백명의 시민과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집권은 영호남을 비롯한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켰고, 그 여파는 아직도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휴전선을 지키는 군대를 서울 한복판으로 불러들여 안보위기를 초래하였다. 집권 후에는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시민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였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부터 공갈 수준의 비열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한마디로 법이 아닌 힘에 의한 통치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결국 전두환은 퇴임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법을 어겼으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독립적 소추기관인 검찰은 전두환을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아 검찰은 다시 전두환을 재수사하여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수괴로 기소하였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민주적 정통성을 내세워 민심을 얻으려는 당시 대통령 김영삼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기가 무엇이든 김영삼의 결단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었다.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으로 감형되었다. 무고한 광주시민 200여명을 살해하고 집권한 다음 2205억 원의 뇌물을 거둬들인 전두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에 앞서 법리적인 비난이 가능할 것 같다.

형량은 책임에 비례해서 정해지기 마련이다. 200명이 아닌 2명을 살해해도 사형이 선고되는 우리나라 사법실무에 비추어 수백명의 양민을 살해한 사람에게 무기징역이 과연 합리적 양형인지 사법부의 양심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형량은 책임에 비례해서 정해지기 마련이다. 200명이 아닌 2명을 살해해도 사형이 선고되는 우리나라 사법실무에 비추어 수백명의 양민을 살해한 사람에게 무기징역이 과연 합리적 양형인지 사법부의 양심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당시의 무기징역에 부가해서 선고된 추징형이 이제 전두환을 발목 잡고 있다. 무기수 전두환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수사와 재판기간을 더한 2년에 불과하였다.

그는 출소 후 자숙이나 봉사 같은 국민적 기대에는 어긋나게 추종세력을 모아 지방과 해외로 골프투어를 다니는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 비용이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인지 몰라도 추징금의 대부분을 미납한 처지에서 할 짓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국민정서인 것이다.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들이 그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며 청와대로 초청하고,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정치적 결단을 전후로 그의 사저를 방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성에 대하여 회의를 가진 분들도 많았다.

그는 분명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된 사람이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존경과 신뢰를 잃었다는 국민적 평가인 것이다. 이러한 그를 아직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의 불법행위와 독재에서 함께 단물을 빨았던 의리 때문이라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비록 전두환은 법치국가의 정신을 철저히 농단했지만 그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치국가란 그런 것이다. 아무리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자라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법이 허용하는 것이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조칼럼



장재웅 광주지법 형사5단독 판사

재판의 주체

피고인이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허위자백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펴보게 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중에 사건 관계자들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극렬히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유전자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생기고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돌만 있었던 사건이 은밀하게 발생했던 사실이나 그들 사이에 오갔던 대화 내용 등은 그곳에 있지 않았던 판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한 사실을 확정해야 할 때면 판사로서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면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관심법이나 과거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인 싸이코메트리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 없는 생각이 드는 것은, 판사도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사가 마치 그곳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처럼 확신에 찬 어투로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여야 하는 것인데, 아니면 피고인에게 판사는 신이 아니어서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제3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른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관사였더라도 같은 판단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선고를 한 후에도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담감을 느끼며 상소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한 실제 진실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판사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사실 판사는 사건에 관하여 가장 알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실의 발견 측면에서만 보면 판사에 의한 재판은 비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판사는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고, 숙련된 방법으로 사건관계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실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보면, 판사나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그리고 범정에 출석하는 증인과 같은 제3자 역시 모두 절차적 정의의 통하여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주체가 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방 후 60여 년이나 계속되어 오던 방식을 바꾸어 피고인의 좌석을 검사와 서로 마주보도록 대등하게 바꾸고, 맨 처음 시행하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모

든 증거 조사를 마친 후 마지막에 시행하도록 한 것도 단순한 자리 변경이나 신문 순서를 변경한 의미가 아니라 진실 발견의 주체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결코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때때로 바쁜 생활에 종사하는 증인이 법정에서까지 나와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출석한 증인에게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출석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며, 그 후 증인 역시 사법감을 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진실 발견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됨을 종종 느끼게 된다.

다시 처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가자면, 질문자에게는 이러한 답변과 함께 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되면 좋지 않은 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 다시는 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하면서도, 만약 증인이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것은 법원이 하는 절차의 객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진실 발견에 참여하여 재판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 사법감을 가지고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게 된다.

무더운 여름, 법정엔 항상 공개되어 있으면 어느 날 시간이 있을 때 방청을 와서 법원, 소송관계인들이 함께하는 실제진실의 발견 과정을 함께하여 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권유하여 본다.

기고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이사

함께하는 가치 실현 ‘크라우드 펀딩’

있던 건 바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해서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상용 가능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지적 재산들을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홍보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후원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뛰어난 프로젝트들이 사장 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펀드레이징 사업이다.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을 넘어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반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표현할 설계와 이를 실현시킬 사람은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하려한다면 기획부터 구상을 마친 후, 함께할 사람들을 모은 다음, 필요한 자본은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투자자 혹은 후원자를 찾아내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 생각을 실현시키는 초기 과정에서 부족한 경제력과 기술적인 문제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해내는 것을 어렵게 하고 그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해 줄 사람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의 이런 시스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만약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대한 소개와 이를 실현할 계획을 인터넷 크라우

드 펀딩 플랫폼에 올리면 된다.

그 다음 프로젝트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다수의 대중에게 소액의 투자금을 모금한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은 소액 투자비용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알리면서 실현되는 모습을 점점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대중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온라인을 통해 모금하니 투자자나 후원자를 직접 찾으려 다니지 않아도 된다.

크라우드 펀딩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투자 수단이 아니라 투자와 기부,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자본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투자에 따른 금전적 보상 없이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부로도 보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기에는 손해를 이 펀드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응원하는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가치를 위한 투자”, 혹은 “사회적 투자”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갑에서 꺼낸 돈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 작은 금액을 꺼내는 일에는 생각을 공유하여 그것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과 응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같이하는 가치,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갈망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아이디어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얼마든지 대중에게 호소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고, 그 진행과정에서 그들을 생각이나 조언까지 들을 수도 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이야기 하고 가능하다면 함께 실현시킬 사람과 자본까지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인 것이다.

세상에 꺼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찾아보자.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속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찾아 후원하고 과감히 내 의견도 더해보자. 내가 하는 일은 티끌일지 모르지만 뒤따를 일은 태산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것이다.

社說

농수축협 임원 선거 금품비리 온상이라니

농·수·축협 조합장에 이어 임원선거에서도 고질병인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합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관리 대상이 아닌 탓에 금품이 난무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5일 여수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 투표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 후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근 해남군 육전농협 이사 선거과정에서는 후보자들로부터 20만~50만원의 현금을 받은 선거인단 30명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강진수협 임원 선거에서도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조합 임원 선거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농·축·수산 생산자의 권익

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의 임원과 대표자가 투명하게 선출되도록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부정선거가 판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이사는 무보수직이지만 조합장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데다 조합원의 자격 심사와 가입·탈퇴 승낙, 사업 승인 및 예산 집행 등의결정을 행사하는 ‘권한’을 지니 경찰을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합장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어 비리 소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당선 후의 후유증도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관계 당국에서는 임원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해당 조합의 상급기관에 선거관리를 맡기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정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불법행위 적발시 엄한 처벌로 제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신종범죄 ‘스미싱’ 피해 확산, 각별한 주의를

광주지역에서만 지난 4개월간 1000여 건에 달하는 ‘스미싱’(Smishing)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미싱은 SMS(Short Message Serv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 쿠폰, 요금 명세서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링크로 접속하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액이 1만~2만 원 선이라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요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스미싱 사건은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로 전파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악성코드가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용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문자

를 확인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접속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또,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www.ctrc.go.kr)에 스미싱 의심 번호로 신고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번호를 파악하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기 피해로 신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스미싱을 당했다든 사실을 알게 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범죄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요금이나 이미 결제됐더라도 콘텐츠 사업자에게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관련기관은 스미싱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번호 차단 등 온라인시스템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법당국도 범죄자를 색출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첫곡 ‘We will rock you’가 흐르면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그들 ‘퀸(Queen)’을 이끄는 프레디 머큐리의 보컬은 변화무쌍하다. ‘Bohemian Rhapsody’ ‘We are the champions’ 등 수많은 히트곡들이 이어지던 지난 1991년 에이즈로 세상을 떠난 그의 존재가 더욱 그리워진다.

‘퀸’의 라이브 공연 중 ‘전설’로 꼽히는 1981년 캐나다 몬트리올 공연 현장을 고스란히 만난 것은 2009년 광주 멀티플렉스에서 개봉한 ‘퀸 록 콘서트’를 통해서다. 스크린 속 공연장은 광란의 도가니였다. 영화관 객석에 앉은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피날레 곡이 끝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1981년 상황을, 2009년 다시 볼 수 있었던 건 ‘퀸’의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의 열정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있기에 가능했다. 35mm 녹화 필름이 한 필름 보관소에서 발견됐고, 700명의 디지털 기술자들이 달려들어 영상과 음향을 복원했다. 오리지널 녹음 테이프에 담겼던 잡음을 제거, 팬들의 합성 소리와 악기, 보컬의 소리를 파트별로 되

살리는 등 음계잡음을 강화했다.

첨단 기술 덕에 이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영화관에 앉아 ‘생중계’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모차르트 고향에서 열리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클래식 마니아들이 죽기 전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음악축제로 꼽힌다. 하지만 유럽까지 날아갈 비행기값이며, 체류비가 만만찮다. 티켓을 확보하는 건 또 다른 전쟁이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만 진행됐던 ‘생중계’를 올해는 광주 메가박스에 서도 경험할 수 있다. 29일 빈필의 개막공연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사이번 레플의 말라 ‘교향곡 1번’(8월11일)이 기다리고 있으며, 바그너의 ‘뉴른베르크의 명가수’(8월3일), 베르디의 ‘팔스타프’(8월4일), 베르디의 ‘돈 카를로’(8월17일) 등 세련된 오페라도 대기 중이다.

극장은 대형 스크린과 완벽하게 세팅된 음향시설로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이다. 최고의 클래식 축제와 함께 한여름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영화관서 클래식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부 2200-6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6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체 육 부 2200-697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사 회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